# 「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7. 12. 10. 개정 판 (시행 2008. 3. 1.) → 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

바뀜 7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93/compare?from=231&to=23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54:1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2조(적용대상)**<br>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 | **제2조(적용대상)**<br>본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임용기간 만료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<br>직위별<br>임용기간<br>승진 소요기간<br>전임강사<br>2 년<br>2(3) 년<br>조 교 수<br>4 년<br>5 년<br>부 교 수<br>6 년<br>6 년<br>교 수<br>정년보장 |
| **제3조(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)**<br>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<br>직위별<br>임용기간<br>승진 소요기간<br>전임강사<br>2 년<br>2(3) 년<br>조 교 수<br>4 년<br>5 년<br>부 교 수<br>6 년<br>6 년<br>교 수<br>정년보장 | **제3조(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)**<br>교원의 직위별 재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 |
| **제4조(통지 및 심사)**<br>① 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| **제4조(통지 및 심사)**<br>①교원 임용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와 승진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및 해당 승진일 4월전에 임용기간의 만료 및 승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(문서에 의한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통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한다.<br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br>③ 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강의, 학생지도, 연구, 봉사, 교육이념(신앙)구현평가 등을 종합하여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. [2008.06.16.재개정]<br>교육이념 구현 평가<br>1. 교수 업적 평가 기준표의 100점 만점 외에 별도의 Pass or Fail제로 한다.<br>2. 교육이념구현 평가에서 Fail한 자는 (1)승진, (2)재임용, (3)연봉승진에서 제외된다.<br>평가는 심사 대상자의 출석교회 담임목사가 제출한 예배 출석확인서를 근거로 교목실에서 한다.<br>4. Pass는 예배일수의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한다.<br>5.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;<br>(1) 교수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(방학 중, 저녁 예배 등), 본인의 출석교회를 교목실에 알린다.<br>(2) 평가 필요시 교목실은 해당 목회자에게 출석 확인서를 송부한다.<br>(3) 담임목사는 해당자의 출석 확인서를 인비로 교목실에 송부한다.<br>(4) 교목실은 확인서를 근거로 Pass or Fail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.<br>(5) Fail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담임목사에게 통보하여 재확인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. | 통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한다.<br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교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br>③승진과 재임용에 대한 평정은 교수로서의 교육, 연구, 봉사, 직무영역을 교원업적평가 서식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. [2005.02.24. 개정] |
| **제6조(평가)**<br>①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, 제3조에 의거 년 2회(2월, 8월)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.<br>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<br>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.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. [2005.02.24. 개정] | **제6조(평가)**<br>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, 제3조에 의거 년 2회(2월, 8월)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적용한다.<br>②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및 승진 해당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승진 및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<br>③교원인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다.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. [2005.02.24. 개정] |
| **제7조(재심)**<br>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| **제7조(재심)**<br>승진과 재임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원하는 피평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「특별법」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대학교 재심위원회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[2005.02.24. 개정] |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[2005.02.24. 개정] |
| **제8조(재심위원회)**<br>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 | **제8조(재심위원회)**<br>재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5인의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원으로 피평자의 전공을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 |
| **제9조(재심결과)**<br>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<br>② 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. | **제9조(재심결과)**<br>①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<br>②제1항의 결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교원에게 통지한다. |